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87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이용우·김태선·정혜경

박홍배 · 임미애 · 서영교

이학영 · 김선민 · 신장식

박 정・황정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1년 12월 국회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자녀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한편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로 근무한 남성을 부(父)로 둔 선천성 희소질환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노동자의 업무와 자녀의 선천성건강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산재보험법상 남성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했음.

살피건대, 모(母)의 업무환경과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父)의업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서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이에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모두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여 장기간 불평등하게 재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권익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함(안 제91조의12).
- 나. 이 법 시행일 전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종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

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다시 청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함(부칙 제2조 단서).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가"를 "근로자가"로, "출산한 자녀에게"를 "자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그 출산한 자녀"를 "그 자녀"로, "임신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 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 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 2.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종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다시 청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u>임</u>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u>근</u>
<u>신 중인 근로자가</u> 업무수행 과	로자가
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	
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	
하여, <u>출산한 자녀에게</u> 부상, 질	<u>자녀에게</u>
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u>그 출산한</u>	<u>그 자녀</u>
<u>자녀</u> (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	
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	<u>근</u>
<u>신한 근로자</u> 가 속한 사업의 근	<u>로자</u>
로자로 본다.	